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55 호 2022. 8. 4.(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59호[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0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1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2호[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3호[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18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82호[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2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83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84호[도로 지정 공고]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85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86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2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8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2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88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2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065호[공시송달 공고] 2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066호[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3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074호[202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3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077호[WMC 울산 송정교회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5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086호[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1089호[행정대집행 계고서] 6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 분기별 표창수여 및 연 1회 이상”을 “포상 수여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동공무원”을 “동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반장”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통·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됨('22. 1. 13. 시행)에 따라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별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장 위·해촉에 관한 조문 삭제(제5조, 제6조, 제7조의2)
- 통장 상해보험 가입 근거 마련(제10조제3항)
- 통·반장 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제11조제2항)
- 통장신분증 서식 삭제(별지 제1호 서식)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

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 가격
 -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
 -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산정방식(단위 : 연간)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溝渠)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로 한다.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艀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3.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가. 전기사업용수 $\text{m}^3/\text{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 m^3 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text{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frac{\text{관의 지름}^2 \times \text{관내유속}(\text{m}/\text{sec})}{146^2 \times 60}$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채취를	가. 구청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울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

위한 점용·사용	<p>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p>나.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p>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m ³)당 100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채취지역 관할 구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시장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장이 해당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구청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22. 3. 1.시행)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그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식 자전거 수리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자전거의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은 무료로 하되, 부품의 신설 및 교체를 할 경우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전거 수리센터 용어 정의 추가(제2조제5호)
-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내용 신설(제14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우선 적용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4.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복구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5. 그 밖에 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방범시설 설치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 ②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8조의 울산광역시 복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실행력 확보 및 범죄 취약 계층의 방법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추가(제2조)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우선 적용 대상 신설(제6조의2)
- 범죄 취약 계층의 방법 시설 지원 근거 추가(제7조)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 추가(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2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603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반장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반장은 해당 통 또는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다만, 해당 통·반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 또는 반장으로 우선 임명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통장을 임명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2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2.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진출한 경우
3. 해당 통·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통·반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의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자 및 책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명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때에는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③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된 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전 면 >

사진

홍길동

○○동 ○○통

울산광역시 북구

< 후 면 >

NO.○○동-001

통장증

소 속 : 북구 ○○동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70. 1. 1.
입 기 : 2020. 1. 1.
 ~ 2022. 12. 31.

2022. 1.
○○동장인

본증은 통장 신분 확인 용도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동(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 5.5cm, 세로 8.5cm
(사진 가로 3.5cm, 세로 4cm)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됨('22. 1. 13.시행)에 따라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통·반장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제1조)
-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2조 ~ 제3조)
- 통·반장 임기에 관한 사항(제4조)
- 통장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제5조)
- 통장신분증 서식(별지 제1호서식)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8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김중호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손골5길 30, 5동 306호 (복산동, 동덕현대아파트)
소하천명		순금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천곡동1024-93번지
	면적	일시: 35.0㎡, 계속: 49.0㎡
	기간	일시: 2022. 8. 1. ~ 2023. 7. 31. 계속: 2023. 8. 1.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인공구조물 설치(BOX교)

열람서류

1. 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8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실시계획 신고번호 (년월일)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공사내용
	성명	주소				
제2022-2호 (2022.7.11.)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1010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67-16번지 일원	3,500	2022.7.29.	물놀이장 설치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84호

도로 지정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 목 : 도로 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4. 공고(도로 지정)내용
 - 가. 도로위치 및 도로개요
 - 울산광역시 복구 관내 도로
 - 나. 세부내역

위 치	지 목	면적(㎡)	소유자	비 고
대안동 760-18	도	32	김**	
대안동 760-3	임야	138	김**	
대안동 760-3	임야	142	김**	

5.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 비치(열람가능)
 도로 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052-241-80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 - 1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7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 나. 명 칭: 양정동 양정초등학교 일원(소3-231, 소1-3호선) 도로개설 사업
3. 사업규모: 도로개설 L=452.0m, B=6.0~8.0m

	당초	변경
연장/폭원	L=452.0m, B=6.0~8.0m	L=452.0m, B=6.0~8.0m
면적	A=6,876.8㎡	A=6,832.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7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86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공원녹지과)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점용 위치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745-53번지	하천의 명칭	매곡천
점용 내용	공작물(조형물)의 신축	점용 면적	일시 : 800㎡ 영구 : 330㎡
점용 기간	일시 : 2022. 8. 4. ~ 2022. 8. 31. 계속 : 2022. 9. 1. ~ 2026.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8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8. 2.
2. 점용·사용의 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인공구조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무룡동935-240번지 외 2개소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37.80m²
 - 2) 계속: 3.36m²
 - 나. 기 간
 - 1) 2022. 8. 15. ~ 2022. 9. 13.
 - 2) 2022. 9. 14. ~ 2026.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주)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88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 : 1건

지번주소	종전도로명주소	변경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연암동 803	원연암1길 5-1	원연암1길 5	2022. 8. 4.	주소사용편의를 위한 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8.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065호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동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8. 4. ~ 2022. 8. 18.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905-1번지	미상	미상	불법점용	9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8. 18.(목)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066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2.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금고의 수 : 1개의 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 약정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4.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우리 구 관내에 영업점(지점)을 둔 금융기관
5. 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 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금고 지정 계획 공고 및 관련서류 열람
 - 공고(열람)기간 : 2022. 8. 5.(금) ~ 8. 19(금)
 - 공고장소 :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관련서류 열람
 - 장 소 : 울산광역시 복구청 징수담당관(1층, ☎052-241-7501)
 - 서 류 : 울산광역시 복구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금고 관련 법령,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 등

7. 금고 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2. 8. 22.(월) ~ 8. 23.(화) ※ 단, 근무시간내(09:00~18:00)
-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징수담당관(1층)
- 부 수 : 신청서 1부, 제안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요약서 12부 별도 제출
-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신청서
 -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제안서 및 부속서류 등
-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8.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기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7점)

※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 붙임(별표1,별표2) 참조

9. 심의 및 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 함

○ 서류심사 이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심사를 병행할 수 있음(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금고를 지정함

○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2개 이상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할 경우 총점과 순위를 공개함

10.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신·구 금고 간 금고 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 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토록 함

○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운영 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금고은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울산광역시 복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금고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11.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따른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부담으로 함

○ 금고운용을 위한 세입 및 자금배정시스템, 수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

12.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구 금고지정 신청안내서(금융기관별 1개 지점에 별도 통지)에 따라 작성하되, 심사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 별로 색인표 부착 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보완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확인 후 봉인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사용인감(도장)과 인감확인서 지참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

○ 제안서 등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 할 수 있으며,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별표1)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8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다.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3점)	25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5점) 나. 구 와의 협력사업계획 ----- (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1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배점
 -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 0점처리 가능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이하일 경우에는 금고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배점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365코너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

- 관내 지역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처리 가능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배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나.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다. 금고관리 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라. OCR 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

- OCR 센터 운영실적 및 처리능력 평가 후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배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배점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074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1년간)

2. 지원대상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범위

- 우리 구 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 사업비의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권고

4. 지원절차

- 계획 공고 ⇒ 신청서 접수 ⇒ 부서 1차 검토 ⇒ 2차 검토(기획예산담당관)
⇒ 위원회 심의·결정 ⇒ 의회 의결 ⇒ 결과 통보

5. 보조금 지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7. 29. ~ 8. 16. 18:00한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접수처 : 울산 복구청 사업주관부서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지원 신청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신규 보조사업자)
- 접수방법 : 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우편 접수분은 2022. 8. 16.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주 소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과

6. 보조금신청 결과 통보

- 시 기 : 2022. 12월(2023년도 예산 의회 의결 후)
- 방 법 : 사업주관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 통보

7. 보조금 교부

- 지원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소관부서에서 교부 및 관리(보조사업자 ⇒ 소관부서)
 -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금 전용 통장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 있을 시 사전 예치 필수)
보조금 전용결제카드 사본(전용카드 미사용 시 향후 사업신청 패널티 적용)

8.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 사업완료시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처 : 사업주관부서
 - ※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하고, 같은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교부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 ※ 해당 수수료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부담
- 성과평가
 - 평가시기 : 2023년 7월 이내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평가 예정
 - 평가반영 :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8.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시 반려됨
- 선정된 사업은 보조금 정산평가를 통하여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정집행은 환수처리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 외에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구 사업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241-7000, 기획예산담당관 241-7115)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① 지방보조금 신청 서식

- 1-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보조사업자)
 - 1-1-1.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
 - 1-1-2.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신규 보조사업자)
 - 1-1-3.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참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사항)

① 지방보조금 신청 서류

1-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보조사업자)

1-1-1.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

1-1-2.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1-1-3. 최근 1년간 공익활동실적(신규 보조사업자)

[붙임1-1](보조사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직원수(회원수)	○ 상근직원	명,	○ 회원수	명
	대표자	성명 :	휴대폰 :		
실무자	직위		성명		
	휴대폰		e-mail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2023. . . ~ . . .	사업(행사)장소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체부담액			천원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사업활동실적 포함, 회원명부 첨부) 1부
2. 사업계획서(사업비산출내역서 포함) 1부
3.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1부. (신규 신청 단체에 한함)

※ 유의사항

사업이 2건 이상인 경우 각각 별도로 작성·신청하여야 함

[붙임1-1-1] (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지방보조사업자 소개서

◎ 기본현황

보조사업자명			
주 소 및 연 락 처	주소 (우편번호 :)		
	○ 전 화: ○ FAX:	○ E-Mail:	
고유번호 등	○ 등록기관	○ 등록일	
	○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보조사업자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보조사업자 연혁	<input type="radio"/> '00.00.00. : 0000창립(설립) <input type="radio"/> '00.00.00. : 000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조직현황	대표자 (※ 공동대표일 경우 모두기재)	사무국 직원수	명
	회원수	명	
2022년도 예산현황	<input type="radi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 정부보조 : %, 사업수익 : %, 기타 : %		

◎ 사업활동 실적(2021. 1. 1 ~ 2022. 현재)

단 위 사 업 명	활 동 내 용	비 고
1)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소요금액 : ○ 사업내용 :	
2)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3)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4)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행사내용 :	

※ 실적을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반드시 작성하고, 필요시 각종 자료, **사진 등 첨부(필수)**
 단체 고유사업 및 북구 주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각종 행사에 참여한 실적 포함 작성

◎ 최근 2년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역

2021년도			2022년도		
사 업 명	금 액 (천원)	지원부서	사 업 명	금 액 (천원)	지원부서

[붙임1-1-2] 사업계획서(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행사)개요

- 기 간 : 2023. . . ~ 2023. . .
- 장 소 :
- 사업내용
 - 사업대상, 추진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
 -
 -

4. 사업 성과목표

< 성과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구분	'21	'22	'23	
	목표				(예시) ◦ 이용인원/운영계획*100 ◦ 참여인원(명)/계획인원(명) ◦ 개최횟수/개최계획 등
	실적				

4.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23. . .	○ ○ ○	
2023. . .	○ ○ ○	

5.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예시)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출내역	경비 사용방법
총 계		(100%)		
보조금(소계)		(100%)		
사업명	홍보비	(%) 0		
	인쇄비	(%) 0		
	임차료	(%) 0		
	활동비	(%) 0		
	⋮	(%) 0		
자부담(소계)		(100%)		
사업명	참석수당	(%) 0		
	교통비	(%) 0		
	⋮	(%) 0		

〈작성요령_예시〉

- ① 예산항목 : 홍보비, 인쇄비, 임차료 등 예산비목으로 구분
- ② 금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③ 산출내역 : 구체적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
- ④ 경비사용방법 :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 ⑤ 유의사항
 -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는 개별법령에 운영비 지원 근거규정이 있는 보조사업자에 한함
 - ※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정산)
 - 보조금 부족으로 계획없는 자부담 집행할 수 없음.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 「○ ○사업추진」시 인쇄경비(총 8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3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산출내역은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 시 기준이 됨)

6. 보조금 외 경비부담 내역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담자 성명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고
계	○○명			
자 부 담 (회비 등)	○○○외 00명	₩100,000	회비	(예시)
기 타 (기부금 등)				
	:			

7. 재산현황

(단위 : 천원)

자 산 액	부 채 액	비 고

8.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

9. 수입금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사 업 명	수 입 금 (단위:천원)	수입 내역	비 고

※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붙임1-1-3](신규보조사업자가 작성-서식변경하지 마세요.)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 신규 신청 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page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 업 명	활 동 실 적	비 고
	1. 사업기간 : 2. 장 소 : 3. 참여인원 : 4. 활동내용 : 5. 사업효과 :	

【참고자료 1-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목	비 목	기 준	지출 한도액(원)		비 고	
인건비	강 사 료	◦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 지급 불가	
	원 고 료	◦ 「울산광역시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준용			◦ 강의 시간당 6매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 기준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단순인건비	◦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시간당	9,620	◦ 단체 소속회원에 지급불가	
	회 의 비	◦ 심의의결위,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 지급하는 수당	2시간 이내		70,000	◦ 단체 내부 회의는 미해당
2시간 30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함)				30,000		
홍보비	홍 보 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현수막(표준형)	개당	50,000	◦ 100만 원 이상 지출 시 타견적서 첨부
			현수막(대형)	개당	100,000	
			배너	개당	50,000	
			피켓	개당	30,000	
			어깨띠	개당	3,000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등	장당	500	
	인 쇄 비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			◦ 컬러 인쇄 지양, 양면인쇄 원칙 ◦ 100만 원 이상 지출 시 타견적서 첨부	
임차료	차 량 임 차 료	◦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	관내	대당	400,000	
			관외	대당	800,000	
	장 소 임 대 료	◦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 체결			◦ 가급적 공공시설 활용	
사 업 진행비	식 비	◦ 1인 / 1식당 8,000원	/		◦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식비로만 사용가능 ※ 회의·행사 후 내부 회원 식사 등에 지원 불가	
	다 과 비	◦ 1인당 3,000원			◦ 각종 행사,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구입비	
	물 품 구 입 비 (재료비 등)	◦ 시장시세 적용 (예. 행사용 소모품, 진행용품, 물품 구입 등)			◦ 50만 원 이상 지출 시 타견적서 첨부	

【참고자료1-2】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행방법(기준)	비고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 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고 식대 등 소모성 지출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인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달청)인쇄기준으로 하고 표준규격(10절, 16절)으로 레자 크기의 표지와 재생지 또는 중질지의 재질에 양면인쇄 및 단색인쇄 원칙 	
식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지출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국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는 이코노미(2등정액) 요금 원칙, 체재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현지 시가 	
통역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회의 등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 기준단가에 준하여 집행 	
영수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077호

WMC 울산 송정교회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9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07. 29.(금) ~ 2022. 08. 05.(금)
2.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p>가. 사업명 : WMC 울산 송정교회 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p> <p>다. 시 공 자 : 하우텍씨엔알건설(주)</p> <p>라. 설 계 자 : 디자인그룹 함건축사사무소</p> <p>마. 감 리 자 : 디자인그룹 함건축사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53번지 ○ 대지면적 : 3,277.00 M² ○ 연 면 적 : 4,910.25 M²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 세 대 수 : 주건축물1개동 ○ 공사기간 : 2022년 02월 15일 ~ 2023년 02월 14일 ○ 허 가 일 : 2021년 11월 19일 ○ 착공신고수리일 : 2022년 04월 13일 ○ 공 사 비 : ₩ 7,661,500,000원 (VAT포함)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비용 : ₩ 12,0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 : 13,200,000원 ○ 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

3. 안전점검 내용

가. 수행예정표

항 목	횟 수	단 가	금 액	산출근거
정기점검(천공기)	2	1,500,000원	3,000,000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정기점검(거푸집동바리)	2	1,500,000원	3,000,000원	
정기점검(흙막이지보공)	2	1,500,000원	3,000,000원	
정기점검(복합가설구조물)	2	1,500,000원	3,000,000원	
계	8		12,0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07. 29.(금) 17: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08. 05.(금)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08. 05.(금) 12: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08. 05.(금) 11: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08. 08.(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능력	40점	$\circ \text{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 <p>*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p>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86.745%)	6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 \text{평점} = 60 - 4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는 절대값 표시임.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합계	100점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

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1086호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 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관련 각종수당 및 연금 지급일자가 상이함에 따른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등의 민원제기에 따른 우리 구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자 변경으로 보훈관련 민원을 해소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안 제6조)

- 현행 : 매월 말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 변경(안) :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급일자 명시조항 삭제를 통한 지급일자 변경 유연성 확보

3.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붙임1, 붙임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 붙임 3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4층 복지지원과(연암동, 북구청)
- 2) 전화번호 : 052-241-7606
- 3) 팩스번호 : 052-241-760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매월 말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를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u>매월 말 다음 달 15일까지</u>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p>	<p>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 ----- ----- <u>매월</u> <u>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u></p>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108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2년 7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60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경작물을 2022년 7월 28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2년 8월 18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하천법」 제73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면적	대집행 방법
중산동1178-54번지	경작	10㎡	불법경작 원상회복
중산동1010-3번지	경작	60㎡	불법경작 원상회복

2022년 8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